[성진글로벌 경영지원 서비스 계약서 (공급자 우위형, 2025 ver.)]

제 1 조(목적)

본 계약은 **주식회사 성진글로벌(이하 "공급자")**이 **클라이언트(이하 "수요자")**에게 기업경영지원 및 인증·등록·브랜딩·정책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, 양 당사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서비스 범위)

- 1. 공급자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CI 제작(로고, BI 등)
 - 2. 홈페이지 기획·디자인·퍼블리싱 및 도메인 등록 대행
 - 3. 각종 인증(중소기업확인, 창업기업확인, 여성기업확인, 메인비즈, 이노비즈, 벤처기업확인, ISO 9001/14001 등) 취득 컨설팅
 - 4. 특허·상표 출원 대행 및 정책자금/IP 금융 연계 자문
 - 5. 사업계획서, IR 자료, 보고서 작성 및 금융기관 제출용 패키지 제작
- 2. 세부 과업 범위 및 납품물은 개별 견적서 및 과업지시서를 통해 확정한다.

제 3 조(계약 기간 및 진행 일정)

- 1. 계약 효력 발생: 계약금이 공급자 계좌에 입금된 날부터 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며, 계약금 입금 전에는 어떠한 업무도 착수하지 않는다.
- 2. 일반 업무 일정:
 -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공급자는 내부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가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공 및 협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모든 인증 및 작업을 완료한다.
- 3. **기간 단축 요청:**
 - 수요자가 **1개월 이내 또는 특정 희망 일정에 맞춘 조기 완료**를 요구할 경우, 공급자는 **계약금 100% 완납**을 전제로 착수한다.
- 4. 지연 사유:
 - 수요자의 자료 지연 제출, 승인 지연, 정책기관 심사 지연 등 공급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일정 변경은 공급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 4 조(대금 및 지급조건)

- 1. 일반 서비스 대금:
 - 계약금(착수금): 총액의 50%를 계약 체결 후 3 영업일 이내 지급.
 - 중도금: 전체 진행률 50% 도달 시 30% 지급.
 - 잔금: 프로젝트 완료 및 중간 산출물 전달 후 7일 이내 지급.
- 2. 위탁 업무(100% 선결제 대상):

○ 벤처기업 확인, 메인비즈, 이노비즈, ISO 인증, 특허·상표권 관련 업무 등 위탁·대행 성격의 업무는 계약금 100% 선결제 후 착수한다.

3. **실비성 비용 정산:**

- 도메인 등록비, 서버 호스팅비, 각종 세금·수수료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는 공급자가 선결제할 수 있으며,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내역서 및 영수증을 수령한 후 **7일 이내 전액 정산**한다.
- 4. 공공기관 수수료·세금·특허청/관공서 납부 비용 등은 별도이며 수요자가 전액 부담한다 성진글로벌 경영지원 메뉴얼

제 5 조(지적재산권 및 문서 사용 제한)

- 1. 공급자가 제작·제공하는 모든 산출물(CI, 홈페이지, 보고서, 인증 서류 등)의 **저작권과** 소유권은 잔금 완납 전까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.
- 2. 잔금 완납 전에는 수요자는 해당 문서를 **외부 제 3 자에게 제출, 양도, 공유할 수 없으며**,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3. 문서는 수요자의 임직원 또는 업무 수행 담당자만 내부 검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 6 조(계약 해지 및 해약)

1. 수요자 귀책 해지:

- 계약금 입금 후 수요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.
- 전체 프로젝트의 50% 이상 진행 후 해지 요청 시, 이미 집행된 인건비·자문료·디자인료 등 실비를 공제한 잔여금만 반환하며, 진행률 70% 초과 시 환불 없음.
- 위탁 업무(제 4 조 제 2 항)에 착수한 경우 또는 수요자가 조기 작업(1 개월 이내 등)을 요청해 100% 선결제한 경우, 계약자가 변심하여 해지하더라도 금액은 전액 반환되지 않는다.

2. 공급자 귀책 해지:

-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14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이 경우 공급자는 미수행 부분에 한해 선지급금을 정산 후 반환한다.

3. **불가항력:**

○ 천재지변, 정부 정책 변경, 법령 개정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중단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7 조(반품 및 환불)

- 1. 공급자의 서비스는 지식서비스/무형재화이므로 원칙적으로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다.
- 2. 단, 계약금 지급 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.
- 3. 특허·인증·정책자금 컨설팅 등 **외부 기관 승인 결과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지지** 않으며, 승인 불가 시에도 환불되지 않는다.

제 8 조(비밀유지)

계약 수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·기술상 비밀을 제 3 자에게 유출·공개해서는 안 된다. 단, 법령상 요구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.

제 9 조(책임의 제한)

- 1. 공급자는 정책기관(특허청, 중소벤처기업부, KIBO 등)의 승인 여부 및 심사 기준 변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2. 정책자금·보증 승인 불가, 조달 입찰 탈락 등 **외부 기관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해** 공급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3.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손해배상 한도는 **계약대금 총액을 상한**으로 한다.

제 10 조(분쟁 해결)

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**대한상사중재원 중재** 또는 **서울중앙지방법원**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